

PCT NEWSLETTER

www.wipo.int/pct/ko

2019년 1월 | 2019/01호

PCT 뉴스레터 한국어판은 영문판(www.wipo.int/pct/en/newslett) 중 한국어 사용자 분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영문판에서만 제공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 영문 원본을 참조하십시오. 영문판과 한국어판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판에 기재된 사항이 우선합니다.

부다페스트 조약

뉴질랜드의 가입

뉴질랜드는 2018년 12월 17일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에 가입서를 기탁하여, 이로써 해당 조약의 총 당사국 수가 81개국 되었습니다. 부다페스트 조약은 뉴질랜드에 대하여 2019년 3월 17일부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가입은 토크라우 제도에는 잠정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 내용은 아래 부다페스트 통지 내용(Budapest Notification No. 332)을 확인하십시오.

www.wipo.int/treaties/en/notifications/budapest/treaty_budapest_332.html

부다페스트 조약이란

부다페스트 조약 및 규칙을 요약하고 해당 조약의 주요 장점을 설명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treaties/en/registration/budapest/pdf/wo_inf_12.pdf (영어)

www.wipo.int/treaties/fr/registration/budapest/pdf/wo_inf_12.pdf (프랑스어)

www.wipo.int/treaties/es/registration/budapest/pdf/wo_inf_12.pdf (스페인어)

몬테네그로에서의 특허 보호 취득

유럽 특허청(EPO)의 확장 절차를 통해 2010년 3월 1일부터, PCT에 따라 출원된 출원을 포함한 유럽 특허 및 유럽 특허 출원이 몬테네그로까지 확장 가능하게 된 바 있습니다 (*PCT 뉴스레터* 2010/02호 참조). 몬테네그로의 지정과 모든 유럽특허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회원국의 지정이 취하되지 않는 한, PCT 루트(PCT Route)를 통해 유럽 특허를 몬테네그로까지 확장하는 것은 모든 PCT 출원에서 청구된 사항으로 간주됩니다.

몬테네그로 특허청은, 몬테네그로 특허청에 국내단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몬테네그로에서 특허를 취득하기 원하는 출원인들은 유럽 특허청에서 지역단계에 진입해야 한다고 국제사무국에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출원인들은 아래 사항을 유념해야 합니다.

- 유럽 지역단계 진입 기간(우선일로부터 31개월) 내에 유럽 특허청에 확장수수료(현재 EUR 102)를 납부해야 함
- 해당 출원에 대한 특허의 허여 또는 거절 결정을 포함하는 실제 심사는 유럽 특허청에서 수행
- 유럽 특허청에 의한 유럽 특허 허여 공고일로부터, 몬테네그로 특허법에 따른 국내 특허에서 부여하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가 확장된 유럽 특허에서 부여. 단, 유럽 특허 허여가 공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특허의 보유자가 몬테네그로 특허청에 해당 유럽 특허의 청구범위에 대한 몬테네그로어 번역문을 제출하고 허여된 유럽 특허의 특허 청구범위 번역문에 대한 인쇄 비용과 소정의 공개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 몬테네그로는 자국에 확장되어 허여된 유럽 특허에 관한 자료를 자국 등록부에 공고

유럽특허기구 행정위원회(Administrative Council of the European Patent Organisation)는 몬테네그로가 유럽특허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에 가입하도록 초청했습니다. 몬테네그로는, 해당 협약에 가입하여 체약국이 되면, PCT 조약 제45조제2항에 따라 공식적으로 "국내 루트(national route)를 폐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 내용은 *PCT 출원인 가이드* 국내편(EP 및 ME)을 확인하십시오.

www.wipo.int/pct/en/guide/index.html

PCT 특허심사하이웨이 (PCT-PPH) 시범사업

페루 지적재산권 및 경쟁력 보호청, 글로벌 PPH(GPPH) 시범사업에 참여

2019년 1월 6일, 페루 지적재산권 및 경쟁력 보호청(National Institute for the Defense of Competi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Peru))이 글로벌 특허심사하이웨이(GPPH) 시범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참여관청 수가 총 26개가 되었습니다.

해당 시범사업에 따르면, 참여관청 중 한 곳에 출원하는 경우, 다른 참여관청에서 발행한 자료(해당 시, 국제조사기관이나 국제예비심사기관의 PCT 견해서, 또는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IPRP)(제2장) 포함)를 토대로 출원을 우선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적어도 하나의 청구항이 이전에 심사한 관청으로부터 특허성을 인정받은 바 있고, 나머지 관련 자격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요청이 가능합니다. 시범사업에서는 통일된 자격요건을 적용하며, 사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PPH 네트워크를 간소화하고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GPPH 시범사업을 활용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포함한 추가 정보는 아래 PPH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www.jpo.go.jp/ppph-portal/globalpph.htm

PCT 웹사이트 내 PCT-PPH 관련 페이지도 아래와 같이 업데이트 되어있습니다.

www.wipo.int/pct/en/filing/pct_pph.html

미국 특허청(USPTO): 2018년 12월 5일 및 2019년 1월 14일 휴무

미국 특허청은 연방 공휴일로 인정되는 아래 날짜에 공식 사무 처리를 중단했습니다.

- 2018년 12월 5일(대통령 포고에 따라)
- 2019년 1월 14일(기상 악조건으로 인해)

이에 따라, PCT 규칙 80.5에 의거하여,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미국 특허청에 도달해야 하는 서류 또는 수수료의 기한이 해당 날짜 중 하나에 만료된 경우 그 기한이 다음 영업일로 연장되어, 2018년 12월 6일과 2019년 1월 15일에 각각 만료되었습니다.

미국 특허청의 휴무에 대한 공지는 아래 미국 특허청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uspto.gov/learning-and-resources/operating-status#dec52018

www.uspto.gov/learning-and-resources/operating-status#jan142019

PCT 정보 업데이트

국제조사 관련 조사료 및 기타 수수료 (호주 특허청)

호주 특허청은 선조사가 호주 특허청에 도움이 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조사료의 최대 50%를 반환하도록 조사료 반환 조건을 변경했다고 통지했습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D (AU) 업데이트)

PCT 행정지침 개정

2019년 1월 1일부로, PCT 행정지침(Administrative Instructions) 내 섹션 102, 109, 705*bis*, 713이 각각 개정되었으며 섹션 406*bis*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2019년 1월 1일 발효된 개정사항이 반영된 개정된 행정지침 통합본은 PCT 웹사이트에서 PDF 형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en/texts/index.html (영어)

www.wipo.int/pct/fr/texts/index.html (프랑스어)

www.wipo.int/pct/es/texts/index.html (스페인어)

영어 및 프랑스어 버전은 HTML 형식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상기 변동사항은 아래 PCT 회람(PCT Circular C. PCT 1555)에 보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www.wipo.int/pct/en/circulars/2018/1555.pdf

PCT 서식 개정 (2019년 1월 1일 발효)

아래 언급된 개정 서식들은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en/forms/index.html

개정 관련 추가 세부내용은 아래의 PCT 회람(PCT Circular C. PCT 1555)을 참고하십시오.

www.wipo.int/pct/en/circulars/2018/1555.pdf

출원서 서식 및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서식

출원서 서식(PCT/RO/101) 및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서식(PCT/IPEA/401)의 2019년 1월 버전을 편집 가능한 PDF 형식으로,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리관청과 관련된 서식

아래의 서식들이 개정되었습니다.

PCT/RO/102 (소정의 수수료 납부 관련 통지서)

PCT/RO/106 (국제출원의 흠결 보정 요구서)

PCT/RO/130 (국제공개 정보 생략 요청 요구서)

PCT/RO/133 (소정의 수수료 및 가산료 납부 요구서)

PCT/RO/156 (PCT 규칙 4.17에 따라 출원서에 기재된 선언의 보정 요구서)

해당 서식들은 편집 가능한 PDF 형식으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로 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사무국의 수리관청과 관련된 서식

아래의 서식이 개정되었습니다.

PCT/ROIB/199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제출된 서류의 접수 통지서)

해당 서식은 편집 가능한 PDF 형식으로, 영어와 프랑스어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조사기관과 관련된 서식

아래의 서식들이 개정되었습니다.

PCT/ISA/201 (국제형조사보고서)

PCT/ISA/203 (국제조사보고서 부작성 선언서)

PCT/ISA/210 (국제조사보고서)

PCT/ISA/215 (국제공개 정보 생략 요청 요구서)

PCT/ISA/220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선언서 송부 통지서)
PCT/ISA/237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해당 서식들은 PDF 형식으로,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적 조사기관과 관련된 서식

아래의 서식들이 개정되었습니다.

PCT/SISA/502(보충적 국제조사보고서 부작성 선언서)
PCT/SISA/507(보충적 조사 청구서 미제출 간주 선언서)
PCT/SISA/512(국제공개 정보 생략 요청 요구서)

해당 서식들은 PDF 형식으로, 영어와 프랑스어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사무국과 관련된 서식

아래의 서식들이 개정되었습니다.

PCT/IB/308(a) (국제출원의 송부를 출원인에게 알리는 최초의 통지서(조약 제22조제1항에 의한 30개월의 기한을 적용하지 않는 지정관청들 대상))
PCT/IB/308(b)(국제출원의 송부를 출원인에게 알리는 추가적인 두 번째 통지서(조약 제22조제1항에 의한 30개월의 기한을 적용하는 지정관청들 대상))
PCT/IB/311 (국제출원 공개 관련 통지서)
PCT/IB/313 (국제출원의 흠결 통지서)
PCT/IB/315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
PCT/IB/332 (선택관청에의 선택통지 관련 정보)
PCT/IB/338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PCT 제1장 또는 제2장) 번역문 사본의 송부 통지)
PCT/IB/367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 기재 요구서)
PCT/IB/368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송부 통지서)
PCT/IB/369 (국제예비심사청구서 미제출 간주 통지서)
PCT/IB/370 (PCT 규칙 4.17에 따라 출원서에 기재된 선언 보정 요구서)
PCT/IB/373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PCT 제1장))
PCT/IB/375 (보충적 조사 청구서)

개정 서식 PCT/IB/375는 편집 가능한 PDF 형식으로 영어와 프랑스어로, 나머지 개정 서식들은 PDF 형식으로 영어와 프랑스어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CT 수리관청 가이드라인 개정

2019년 1월 1일부로, PCT 수리관청 가이드라인 내 단락 76, 139, 141, 143, 149, 153, 159, 161A, 222, 222A, 223 내지 227, 267, 273, 290, 307, 322 및 337과, 단락 138과 139 사이에 있는 도표가 각각 수정되었습니다. 부속서 B도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PCT 회람(PCT Circular C. PCT 1555)에서 확인하십시오.

www.wipo.int/pct/en/circulars/2018/1555.pdf

개정사항이 반영된 개정된 가이드라인 통합본은 PCT 웹사이트에서 PDF 형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en/texts/gdlines.html (영어)

www.wipo.int/pct/fr/texts/gdlines.html (프랑스어)

www.wipo.int/pct/es/texts/gdlines.html (스페인어)

영어와 프랑스어는 HTML 형식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가이드라인 개정

2019년 1월 1일부로,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가이드라인 내 단락 17.11의 항목(vii)과 제21장이 수정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PCT 회람(PCT Circular C. PCT 155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en/circulars/2018/1555.pdf

개정사항이 반영된 가이드라인 개정본은 PCT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en/texts/pdf/ispe.pdf (영어)

www.wipo.int//pct/fr/texts/pdf/ispe.pdf (프랑스어)

www.wipo.int//pct/es/texts/pdf/ispe.pdf (스페인어)

신규/업데이트 PCT 자료

PCT 실무그룹 보고서

2018년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된 제11차 PCT 실무그룹의 보고서(문서 PCT/WG/11/27)가 서신 왕래를 통해 채택되어 해당 회차의 다른 자료들과 함께 아래에 업로드 되었습니다.

www.wipo.int/meetings/en/details.jsp?meeting_id=46429

원격학습과정: 특허협력조약 개론 (2019년 1월 제공)

PCT에 관한 기초적 원격학습과정(DL101PCT)이 영어로 업데이트 되었으며, 곧 다른 9개 PCT 공개언어로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해당 업데이트로 모듈 5(PCT 전자서비스)의 내용이 바뀌고

모듈 1(PCT란 무엇인가?)과 모듈 2(왜 PCT를 왜 이용하는가?)의 끝부분에 퀴즈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과정은 PCT 제도에 대한 소개 및 전반적 개요를 제공하고, 전적으로 자기학습을 기반으로 하며 이해도와 진도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문항을 포함합니다. 해당 과정의 모듈을 모두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과정 수료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정은 무료이며 수강을 원하시면 아래 WIPO 아카데미 사이트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https://welc.wipo.int/acc/index.jsf>

https://welc.wipo.int/acc/index.jsf?page=courseCatalog.xhtml&lang=kr&cc=PCT_101K#plus_PCT_101K (한국어판)

PATENTSCOPE 검색시스템

불가리아 및 조지아, 이탈리아, 라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루마니아의 국내 자료들

불가리아 및 조지아, 이탈리아, 라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루마니아의 국내 특허 자료들을 이제 PATENTSCOPE 검색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atentscope.wipo.int/search/ko/advancedSearch.jsf>

이로써 PATENTSCOPE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국내 또는 지역 관청의 수는 현재 57개입니다.

2018년 WIPO 지식재산 현황

2018년 WIPO 지식재산 현황(WIPO IP Facts and Figures 2018) 자료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ublications/en/details.jsp?id=4382&plang=EN

해당 자료는 지식재산(IP) 활동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며, 특허, 실용신안, 상표, 산업디자인의 네 가지 유형의 산업재산을 다루는 참고자료입니다. 자료에는 주로 2017년 통계자료가 사용되었는데(완전한 통계치가 확보 가능한 최신 연도), 통계자료는 WIPO의 종합적 보고서인 "2018년 세계지식재산지표 보고서"(PCT 뉴스레터 2018/12호에 출간 안내)에서 나왔습니다.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 버전도 곧 준비될 예정입니다.

유용한 도움말

국제단계에서 우선권 주장을 확인하는 정도

Q: 제가 출원한 국제출원에서 선 국내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했는데, 국제단계에서 이러한 우선권 주장의 유효성을 어느 정도까지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A: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국제단계에서 국제조사기관(ISA) 과 국제예비심사기관(IPEA) 중 적어도 어느 한 곳이 우선권 주장의 유효성에 대한 견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나, 우선권

주장의 유효성은 국내단계에서 지정관청에 의해서만 확정적으로 결정됩니다. 관련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권에 관한 규정은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파리협약)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국제출원은, 파리협약 당사국 또는 파리협약 당사국이 아닌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대하여 출원된 하나 이상의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PCT 제8조제1항에 규정된 선언("우선권 주장")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PCT 절차상 우선권 주장은 특히 중요한데, 이에 따라 PCT에 따른 기간의 계산을 위한 우선일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PCT 제2조(xi)(a) 참조).

수리관청과 국제사무국이 우선권 주장의 실체적 유효성(substantive validity)을 고려하지는 않지만, 수리관청이 먼저, 그리고 그에 이어 국제사무국이, PCT 규칙 4.10의 요건대로 아래 선출원 관련 정보가 모두 우선권 주장에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 선출원일자(보통 국제출원의 우선일로 간주)
- 선출원번호
- 선출원이 어디서 출원되었는지에 대한 내용
 - 선출원이 국내출원인 경우, 출원된 파리협약 당사국 또는 파리협약 당사국이 아닌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국명
 - 선출원이 지역출원인 경우, 출원된 지역관청의 명칭¹
 - 선출원이 국제출원인 경우, 출원된 수리관청의 명칭

ePCT나 PCT-SAFE를 통해 출원하면 해당 소프트웨어가 자동 확인기능을 수행하는데, 예를 들어, 우선권 주장에 누락되거나 유효하지 않은 요소가 있는 경우 이를 출원인에게 알립니다. 이는 JPO PAS나 EPO 온라인 출원 시스템과 같은 다른 특정 전자적 출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수리관청과 국제사무국은, 선출원일자의 포함 여부 외에도, 국제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즉, "우선권 기간" 이내에(PCT 규칙 2.4 참조)) 출원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국제출원일자가 우선권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라면, 국제출원일자가 해당 만료일을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우선권 주장이 무효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는 우선권 기간과 관련하여 국제단계에서 수리관청 또는 국내단계에서 지정관청(또는 선택관청)에서 출원인의 우선권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한 것입니다(각각 PCT 규칙 26의2.3 및 PCT 규칙 49의3.2 참조).

우선권 주장과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12개월의 우선권 기간 만료부터 2개월이 지나서 출원이 됐거나, 누락된 내용이 있거나, 선출원번호나 선출원일자가 우선권 서류에

¹ 관련 지역특허조약 당사국 중 적어도 하나가 파리협약 당사국도,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도 아닌 경우, 선출원이 출원된 적어도 하나의 파리협약 당사국 또는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우선권 주장에 명시되어야 함(PCT 규칙 4.10(b)(ii))

기재된 번호나 일자와 상이한 경우, 수리관청이나 국제사무국은 PCT 규칙 26의2.2에 따라 출원인에게 보정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선권 주장과 관련된 내용의 보정/추가에 대한 추가 정보는 향후 본 유용한 도움말 섹션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PCT 규칙 26의2.1(a)에 따른 해당 기간 이내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아래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되면 우선권 주장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이 파리협약의 당사국 또는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에서 출원되지 않은 경우
- 국제출원이 우선권 기간의 만료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 출원된 경우
- 우선권 주장에 필수 기재사항이 빠진 경우, 즉 선출원이 출원된 일자와 출원된 국가 및/또는 관청의 명칭이 누락된 경우

이러한 경우, 선출원일자는 PCT에 따른 기간의 계산을 위한 기초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PCT 규칙 26의2.2(c)에 따라, 우선권 주장이 아래 중 어느 하나의 이유로만 무효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 규칙 4.10(a)(ii)의 규정에 의한 선출원번호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
- 우선권 주장의 기재사항이 우선권 서류상의 해당 기재사항과 상이한 경우
- 국제출원의 국제출원일이 우선권 기간의 만료일보다 늦은 경우 (해당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여야 함)

국제조사기관 및 해당 시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있어, 일반적으로 이들 기관은 우선권의 유효성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심사관이, 선행기술을 구성할 수 있는데 주장된 우선권 일자나 그 이후에 그리고 국제출원일 전에 공개된 문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심사관은 주장된 우선권 일자의 유효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심사관은, 우선권 주장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국제출원일(또는 다른 유효한 우선권 주장의 가장 빠른 일자)을 견해서나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의 기준일로 사용하여 이를 해당 견해서나 보고서의 제2기재란에 반영합니다(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가이드라인 내 단락 6.06 참조). 국제조사기관이나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우선권 주장이 그 자체로 무효라고 선언하지 않으며, 이들 기관의 견해서나 보고서는 국내단계에서 구속력이 없습니다.

다만 국내단계에서 지정관청은, 국제단계에서 이루어진, 국제단계를 위해 우선권 주장이 무효라는 선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정관청은 출원인이 선출원의 출원인과 동일인인지 확인하고, 동일인이 아니거나 출원인의 이름이 변경된 경우, 선출원에 대한 출원인의 우선권 주장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PCT 규칙 51의2.1(a)(iii))(PCT 규칙 4.17(iii)에 따른 선언이 올바르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필요). 지정관청은 또한 실제심사를 하면서, 파리협약에 따라, 청구범위가 선출원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같은, 우선권 주장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 회복 신청에 관한 추가 정보는, *PCT 뉴스레터* 2015/09호의 유용한 도움말을 참고하십시오.

www.wipo.int/edocs/pctndocs/en/2015/pct_news_2015_9.pdf

그리고 *PCT 출원인 가이드* 내 국제단계 부분의 단락 5.062-5.069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www.wipo.int/pct/guide/en/gdvol1/pdf/gdvol1.pdf

기타 소식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영문판(<http://www.wipo.int/pct/en/newslet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업데이트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협정

호주 특허청

캐나다 특허청

PCT 정보 업데이트

AZ 아제르바이잔 (관청명, 위치 및 우편주소, 전화/팩스번호, 이메일/인터넷 주소)

CO 콜롬비아 (수수료)

IL 이스라엘 (미생물 및 기타 생물학적 물질 기탁 관련 특별 규정, 수수료)

SV 엘살바도르 (수수료)

국제조사 관련 조사료 및 기타 수수료 (이스라엘 특허청, 브라질 국립산업재산권연구소, 노르딕 특허 연구소(Nordic Patent Institute), 스웨덴 특허등록청)

국제예비심사 관련 예비심사료 및 기타 수수료 (이스라엘 특허청)

신규/업데이트 PCT 자료

PCT 출원인 가이드